

의안번호	2200364
의 퇴 인	김용만의원
회 답 일	2024. 7.23.
추 계 번호	24D0721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에 이미 매장·안치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고,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첫해에만 총 240만원(연평균 48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(안 제7조 및 제16조)	2.4					2.4	0.4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이장) 및 제16조(안장비용)	국립묘지에 이미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, 이에 따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는데,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이장) 및 제16조(안장비용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(안 제7조 및 제16조)

- 개정안에 따라 국립묘지에 이미 매장·안치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고,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(대상자) 국립묘지 안장자 중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12명¹⁾
- (단가) 현재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, 국립묘지 내에서의 작업(굴토, 파묘 등)은 국립묘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행 중이며,

1)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1,006명(2024년 4월 기준)이고, 국립묘지 안장자 중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12명임

이후 소요되는 운구비용부터 유가족이 부담하고 있어,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운구비용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국가보훈부의 ‘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’ 사업 중 장의버스 단가인 20만원 적용

- (추가재정소요)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12명 모두 유족이 없다고 가정하면, 240만원으로 추정(12명×20만원)

[표 2]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	2.4					2.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